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리얼에셋 코헨앤스티어스 글로벌 인프라 연배당 부동산 투자신탁(H)(REITs-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리얼에셋 코헨앤스티어스 글로벌 인프라 연배당 부동산 투자신탁(H)(REITs-재간접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국리얼에셋 코헨앤스티어스 글로벌 인프라 연배당 부동산 투자신탁(H)(REITs-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3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 (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6112-5999, kira.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REITs, 리츠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외화 표시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경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2. 인프라 관련 주식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가스·수도, 데이터센터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및 주가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물가, 경기변동,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인프라 이용수요, 원자재 가격, 에너지 비용 및 환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의 경우 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전력 공급 및 비용,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영업환경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인프라 관련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인프라 성격의 해외 집합투자증권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이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인프라 성격의 해외 집합투자증권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므로 관련 종목 또는 집합투자증권에서 거래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산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편입비중이 집합투자규약상 편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비

중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매 손실 발생 등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일부를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성자산이란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필요한 시점에 쉽게 매매하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매각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으로 매각하지 못하거나 평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가격 등 충분한 평가정보가 없는 경우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 상장 리츠 및 해외 상장 인프라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가격과 실제 시장가치 간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매수 또는 매도 과정에서 상당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유동성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환매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 이 투자신탁은 해외 인프라 및 리츠 관련 투자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운용을 위탁하며, 별도의 비교지수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를 특정 비교지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종목의 선정 및 투자비중 등이 결정되므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판단 및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는 특정 시장지수 또는 관련 시장의 성과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이 투자신탁은 회계기간 종료 후 연1회 정기결산에 의한 분배금과 별도로 매년 1회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운용되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성과 및 분배가능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성과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분배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지급되는 분배금이 해당 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하여 지급된 분배금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 및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시 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세금의 이연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복리운용의 효과면에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8. 이 투자신탁의 분배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실제 보유한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등 분배재원과 운용실적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분배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배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판매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해지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해지시까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9.30)

한국리얼에셋 코헨앤스티어스 글로벌 인프라 연배당 부동산 투자신탁(H)(REITs-재간접형) (펀드코드 : F0490)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의 50%초과하여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원본손실위험,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 가격 하락 위험, 글로벌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투자위험 사항

❶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❷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됨

❸ **(부동산 관련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의 가치와 수익성이 **부동산 및 인프라 시장의 가격변동, 임대료 및 임대수익률, 공실률, 금리변동 및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❹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해 국가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는 투자신탁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투자신탁에서 활용될 예정인 전략별 성과 추이
(출처: Cohen & Steers, 2026년 9월말 기준)
금리 상승 시 투자대상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상승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또는 채권 대비 배당수익률의 상대적 매력이 낮아져 리츠 및 인프라 관련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

※ **(동종상품의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 자사동종상품중 대규모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리얼에셋 코헨앤스티어스 글로벌 인프라 연배당 부동산 투자신탁(H)(REITs-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필요성: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은 임대수익에 기반한 배당수익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으로서, 실물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 대비 유동성이 높고 소액으로도 분산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오피스·리테일 중심 리츠에서 벗어나 데이터센터, 통신타워, 물류시설, 셀프스토리지, 시니어주택 등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차세대 부동산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선정기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의 선정기준은 자산유형 및 지역별 분산, 개별 집합투자증권의 시가총액 및 거래유동성, 순자산가치(NAV) 대비 주가 수준, 배당수익률 및 이익 성장성,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보유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입지, 임차인 신용도 등) 등 정량적 요소와, 섹터별 시장사이클 및 경영진의 운용역량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배당수익 및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코헨앤스티어스 자산운용(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에 위탁 운용**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코헨앤스티어스 자산운용(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의 **차세대 부동산투자 전략**(Next Generation Real Estate Strategy)과 **인프라 기회 전략**(Infrastructure Opportunities Strategy)으로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산들을 투자 유니버스로 하여 배분모델, 각 운용팀의 펀더멘탈 뷰 및 자산배분 전략그룹의 통합 리뷰를 통해 **선별된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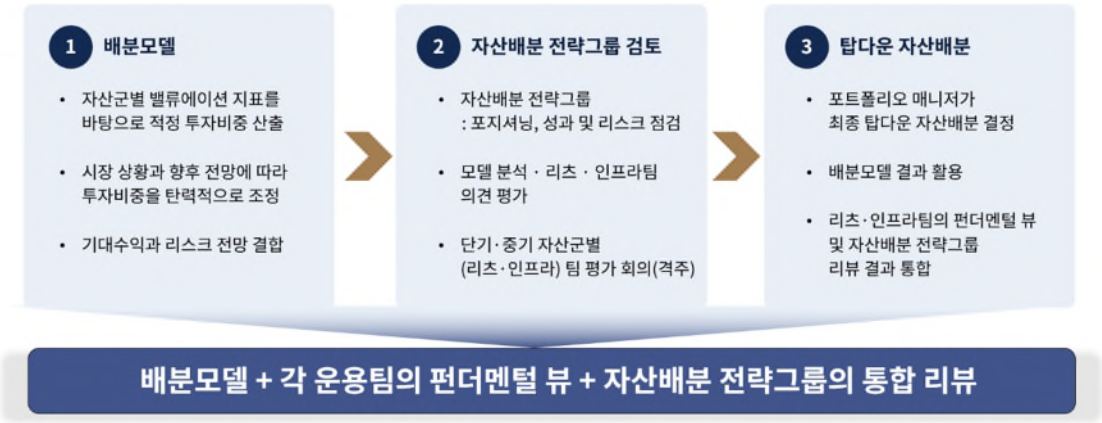
- **차세대 부동산투자 전략**: 데이터 사용량 증가, 물류 밸류체인 전환, 인구 고령화 및 주거 선호도 변화 등 구조적 성장동인의 수혜가 기대되는 데이터센터, 통신타워, 산업용 부동산(물류), 셀프스토리지, 시니어주택 등 차세대 부동산 섹터에 중점 투자

- **인프라 기회 전략**: 전력·수도·가스 등 유틸리티, 운송, 통신, 에너지 미드스트림 등 높은 진입장벽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보유한 인프라 자산 소유·운영 기업에

투자

- 자산군별 벨류에이션, 가격 모멘텀, 기대수익률, 변동성 및 거시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향식 종목 접근방식으로, 액티브 운용전략을 추구합니다.

[코헨앤스티어스의 운용 프로세스]



- 배분모델 기반 투자비중 산출: 자산군별 밸류에이션 지표와 기대수익·리스크 전망을 결합하여 적정 투자비중을 산출하고,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자산배분 전략그룹의 통합 검토: 포지셔닝, 성과 및 리스크를 점검하고, 배분모델 분석 결과와 리츠·인프라 운용팀의 의견을 평가하며, 격주 평가 회의를 통해 자산군별 단기·중기 전망을 검토합니다.

-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최종 자산배분 결정: 배분모델 결과, 리츠·인프라 운용팀의 펀더멘털 견해 및 자산배분 전략그룹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탑다운 자산배분을 결정합니다.

[코헨앤스티어스 포트폴리오 예시]

상장 리츠 포트폴리오 종목 Top 10 1)

기업명	상장국가	세부 섹터
웰타워 (Welltower)	미국	시니어하우징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Digital Realty Trust)	미국	데이터센터
프로로지스 (Prologis)	미국	물류센터
에퀴닉스 (Equinix)	미국	데이터센터
벤타스 (Ventas)	미국	시니어하우징
크라운 캐슬 (Crown Castle)	미국	통신타워
굿맨 그룹 (Goodman Group)	호주	물류센터
아메리칸 타워 (American Tower)	미국	통신타워
퍼블릭 스토리지 (Public Storage)	미국	셀프스토리지
아이언 마운틴 (Iron Mountain)	미국	셀프스토리지

상장 인프라 포트폴리오 종목 Top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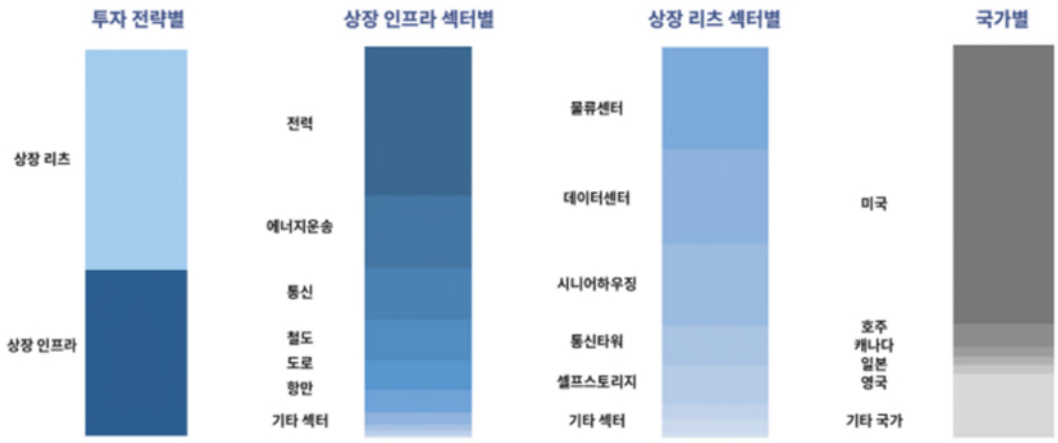
기업명	상장국가	세부 섹터
CSX 코퍼레이션 (CSX Corporation)	미국	철도
윌리엄스 컴퍼니스 (The Williams Companies)	미국	에너지 운송
엔터지 (Entergy)	미국	전력
트랜스캐나다 (TransCanada)	캐나다	에너지 운송
도미니언 리소시즈 (Dominion Resources)	미국	전력
노퍽 서던 (Norfolk Southern)	미국	철도
에이피에이 그룹 (APA Group)	호주	에너지 운송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필리핀	항만
아메렌 (Ameren)	미국	전력
아드미에 (Admie)	그리스	전력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



1)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은 상장 리츠 60%, 상장 인프라 40%로 Cohen & Steers의 전술적 배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포트폴리오]



※ 상기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 설정 기준으로 구성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주식에 대한 정보 취득 및 모니터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관한 정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접 제공받아 운용현황 및 투자한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 정보에는 보유종목 내역, 섹터·국가별 투자비중, 운용성과 및 운용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의 공시 관련 사항은 신탁업자의 해외보관기관(Custodian)을 통하여 전달받습니다. 여기에는 배당 및 분배금, 기업행위(Corporate Action), 주주총회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부동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선취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 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 이내	1.3750	0.5000	0.6600	1.3750	240	383	531	844	1,729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1.7750	0.9000	1.9400	1.7750	182	370	563	969	2,103
수수료 선취-오프라인 (A1)	납입금액의 0.5% 이내	1.6250	0.7500	-	1.6250	216	386	562	932	1,971
수수료 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1250	0.2500	1.2400	1.1250	165	283	406	667	1,412
수수료 미징구-온라인 (C-e)	없음	1.3250	0.4500	1.4200	1.3250	136	277	422	730	1,604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A와 종류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A1와 종류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A-e와 종류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C)	-	-	-	-	-	-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부동산)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용환	1970	본부장	30	21,524	-7.44	-0.9	-7.44	-0.9	12년 3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26.09.30 기준]

성명	생년(년)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Jason A. Yablon	1979	Head of Listed Real Estate Senior Portfolio Manager	- 2004년 Cohen & Steers 입사 - 이전 Morgan Stanley 근무 - University of Pennsylvania, BA
Benjamin Morton	1974	Head of Global Infrastructure Senior Portfolio Manager	- 2003년 Cohen & Steers 입사 - 이전 Salomon Smith Barney 및 NYMEX 근무 - University of Rochester, BA - Yale University, MES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사항 중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등은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

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 가격 하락 위험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하락하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경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 주식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가스·수도, 데이터센터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및 주가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물가, 경기변동,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인프라 이용수요, 원자재 가격, 에너지 비용 및 환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의 경우 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전력 공급 및 비용,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영업환경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인프라 관련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보유자산평가액의 50%이상 ~ 110%이하 범위(목표 환헤지 비율)내에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투자원금액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의 특성상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환율 및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헤지 비율이 목표 환헤지 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규모가 작거나 설정 및 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효율적인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USD 환율변동 위험이 일부 또는 전부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USD 이외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어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섹터(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좀 더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특정국가(미국)의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특정국가(미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분배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실제 보유한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등 분배재원과 운용실적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분배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배금의 지급이 제

		한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배금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시차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분배기준일(최초 분배기준일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2027년 11월 8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1월 8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부터 6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분배금 기준일과 분배금 지급일 간에 최소 6영업일의 시차가 발생하며, 분배금 지급일 도래 전의 대량설정 청구 혹은 대량환매 청구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이 급변동할 경우, 분배금 지급일에 실제 지급되는 분배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연분배지급에 따른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연1회 정기결산으로 인한 분배금 지급과 별도로 매년 분배금이 지급됨에 따라 분배금 지급시 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세금의 이연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복리운용의 효과면에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불리할 수 있고, 연1회 정기결산으로 인한 분배금만 지급되는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분배지급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년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원본에서 마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분배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감소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를 통해 주로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자산의 부도 등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권리행사 요구 및 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의 가치와 수익성이 부동산 및 인프라 시장의 가격변동, 임대료 및 임대수익률, 공실률, 금리변동 및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 수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은 전세계 또는 지역적인 경제상황, 과밀건축 및 경쟁증가, 재산세 및 운영비용 증가, 인구의 구조적 변화, 투자대상 국가의 건축규제 법령의 변경, 사고 또는 수용 손실, 환경적 위험, 점유권에 대한 소송 및 이자율 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증가 등의 사유를 포함합니다. 또한, 홍수, 지진, 화산,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위험에 의해서도 투자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용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운용회사에 외화자산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위탁운용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전문인력의 교체,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위탁운용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위탁운용사가 변경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환율이 계약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환매**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table>
<tr><td>방법</td><td>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방법</td><td>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3">없음</td></tr>
<tr><td>기준가격</td><td colspan="3"><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3"><table>
<tr><td>구분</td><td>과세의 주요내용</td></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r><td>퇴직연금제도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r><td>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td><td>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td></tr>
</table></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대표번호 : 02-6112-5999/ 인터넷 홈페이지 : kira.koreainvestment.com)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
(업무위탁의 범위 :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 발생일</td><td>2026년 10월 30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td></tr>
</table>

종류

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ra.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ra.koreainvestmen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리얼에셋 코헨앤스티어스 글로벌 인프라 연배당 부동산 투자신탁(H)(REITs-재간접형)	F049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F049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F0492
수수료선취-온라인 (A-e)	F049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F0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F04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F04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F04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F04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F04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F05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F05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F05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F050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리츠-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하지 않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리얼에셋 코헨앤스티어스 글로벌 인프라 연배당 부동산 투자신탁(H)(REITs-재간접형)	F049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F049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F0492
수수료선취-온라인 (A-e)	F049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F0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F04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F04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F04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F04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F04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F05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F05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F05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F050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년 월 일	투자신탁 최초설정(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대표전화 : 02-6112-5999, kira.koreainvestment.com)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
주소 및 연락처	1166 Avenue of the Americas, 30th Floor, New York, NY 10036, USA (연락처: +1 212-832-3232)
회사연혁	1986년: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 설립 2003년: 글로벌 부동산·상장 인프라 및 우선주 투자전략 출시 2004년: 모회사 Cohen & Steers, Inc.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종목코드: CNS)
회사소개	미국 Cohen & Steers, Inc.의 100% 자회사
업무위탁의 범위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를 상기의 해외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업무를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6.9.30 기준]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부동산)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용환	1970	본부장	30	21,524	-7.44	-0.9	-7.44	-0.9	12년 3개월
<이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2004.04 ~ 2008.03 : 한국투자신탁운용 리스크관리팀
- 2008.06 ~ 2011.09 : 한국투자신탁운용 호치민사무소
- 2011.09 ~ 2022.07 :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투자본부(리얼)
- 2022.07 ~현재: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해외투자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해당없음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부동산)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	-	-	-	-	-	-	-	-	-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용환	4	3,76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26.9.30 기준]

성명	생년(년)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Jason A. Yablon	1979	Head of Listed Real Estate Senior Portfolio Manager	- 2004년 Cohen & Steers 입사 - 이전 Morgan Stanley 근무 - University of Pennsylvania, BA
Benjamin Morton	1974	Head of Global Infrastructure	- 2003년 Cohen & Steers 입사 - 이전 Salomon Smith Barney 및 NYMEX 근무 - University of Rochester, BA

		Senior Portfolio Manager	- Yale University, MES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사항 중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등은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	-
(주 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	-
(주 1)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부동산(리츠-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합니다.

구분	가입자격 [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다만,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제외한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다만,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제외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1)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중 종류별 가입자격에 해당하는 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필요성: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은 임대수익에 기반한 배당수익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으로서, 실물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 대비 유동성이 높고 소액으로도 분산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오피스·리테일 중심 리츠에서 벗어나 데이터센터, 통신타워, 물류시설, 셀프스토리지, 시니어주택 등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차세대 부동산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선정기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은 자산유형 및 지역별 분산, 개별 집합투자증권의 시가총액 및 거래유동성, 순자산가치(NAV) 대비 주가 수준, 배당수익률 및 이익 성장성,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보유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입지, 임차인 신용도 등) 등 정량적 요소와, 섹터별 시장사이클 및 경영진의 운용역량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하

며,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집합투자증권 등	50%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주식	50%미만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단기사채의 경우 A2(-)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 제4호 내지 제7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7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탁계약서 제17조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주식·통화 관련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장외 파생상품	주식·통화 관련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주1)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주2)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3)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편입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은 "제2부 9. 가.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배당수익 및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코헨앤스티어스 자산운용**(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에 위탁 운용**할 예정입니다.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코헨앤스티어스 자산운용**(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의 **차세대 부동산투자 전략**(Next Generation Real Estate Strategy)과 **인프라 기회 전략**(Infrastructure Opportunities Strategy)으로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REITs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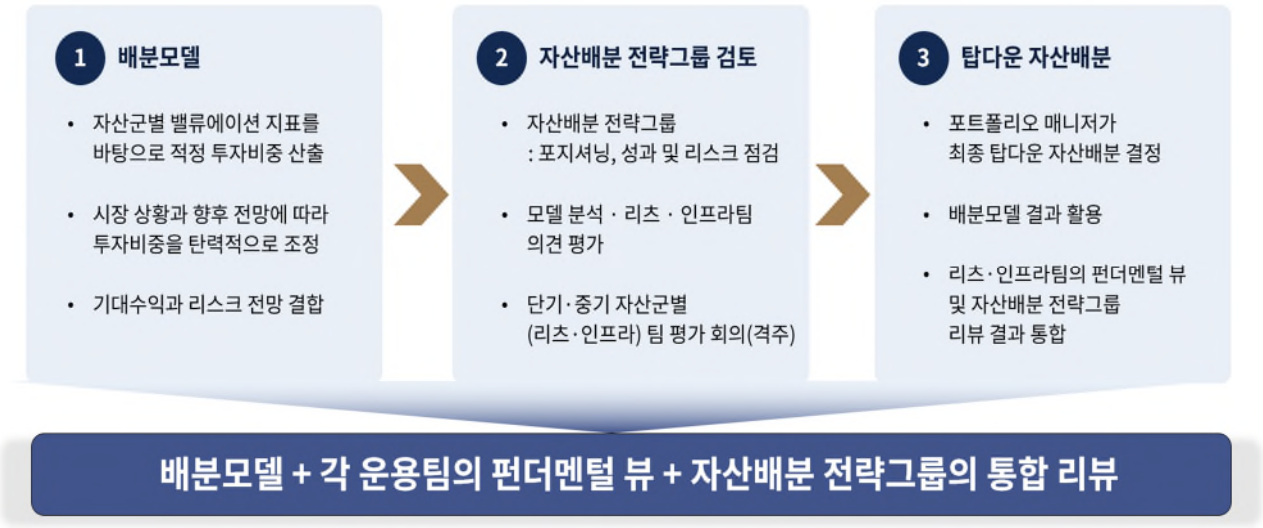
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산들을 투자 유니버스로 하여 배분 모델, 각 운용팀의 펀더멘탈 뷰 및 자산배분 전략그룹의 통합 리뷰를 통해 **선별된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차세대 부동산투자 전략**: 데이터 사용량 증가, 물류 밸류체인 전환, 인구 고령화 및 주거 선호도 변화 등 구조적 성장동인의 수혜가 기대되는 데이터센터, 통신타워, 산업용 부동산(물류), 셀프스토리지, 시니어주택 등 차세대 부동산 섹터에 중점 투자

- **인프라 기회 전략**: 전력·수도·가스 등 유틸리티, 운송, 통신, 에너지 미드스트림 등 높은 진입장벽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보유한 인프라 자산 소유·운영 기업에 투자

- 자산군별 벨류에이션, 가격 모멘텀, 기대수익률, 변동성 및 거시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향식 종목 접근방식으로, 액티브 운용전략을 추구합니다.

[코헨앤스티어스의 운용 프로세스]



- 배분모델 기반 투자비중 산출: 자산군별 밸류에이션 지표와 기대수익·리스크 전망을 결합하여 적정 투자비중을 산출하고,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자산배분 전략그룹의 통합 검토: 포지셔닝, 성과 및 리스크를 점검하고, 배분모델 분석 결과와 리츠·인프라 운용팀의 의견을 평가하며, 격주 평가 회의를 통해 자산군별 단기·중기 전망을 검토합니다.
-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최종 자산배분 결정: 배분모델 결과, 리츠·인프라 운용팀의 펀더멘털 견해 및 자산배분 전략그룹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탑다운 자산배분을 결정합니다.

[코헨앤스티어스 포트폴리오 예시]

상장 리츠 포트폴리오 종목 Top 10 [1)]

기업명	상장국가	세부 섹터
웰타워 (Welltower)	미국	시니어하우징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Digital Realty Trust)	미국	데이터센터
프로로지스 (Prologis)	미국	물류센터
에퀴닉스 (Equinix)	미국	데이터센터
벤타스 (Ventas)	미국	시니어하우징
크라운 캐슬 (Crown Castle)	미국	통신타워
굿맨 그룹 (Goodman Group)	호주	물류센터
아메리칸 타워 (American Tower)	미국	통신타워
퍼블릭 스토리지 (Public Storage)	미국	셀프스토리지
아이언 마운틴 (Iron Mountain)	미국	셀프스토리지

상장 인프라 포트폴리오 종목 Top 10 [1)]

기업명	상장국가	세부 섹터
CSX 코퍼레이션 (CSX Corporation)	미국	철도
윌리엄스 컴퍼니스 (The Williams Companies)	미국	에너지 운송
엔터지 (Entergy)	미국	전력
트랜스캐나다 (TransCanada)	캐나다	에너지 운송
도미니언 리소시즈 (Dominion Resources)	미국	전력
노퍽 서던 (Norfolk Southern)	미국	철도
에이피에이 그룹 (APA Group)	호주	에너지 운송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필리핀	항만
아메렌 (Ameren)	미국	전력
아드미에 (Admie)	그리스	전력

- 다양한 부동산 섹터의 상장 리츠에 투자: 리츠에 속하는 자산군들은 시니어하우징,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통신타워 및 셀프스토리지 등으로 구성하며, 주요 종목에는 웰타워,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프로로지스 및 에퀴닉스 등이 포함됩니다.
- 필수 인프라 관련 상장기업에 투자: 철도, 에너지 운송, 전력 및 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섹터에 투자하며, 주요 종목에는 CSX 코퍼레이션, 윌리엄스 컴퍼니스 및 엔터지 등이 포함됩니다.
-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의 종목 편입: 제시된 주요 종목은 미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필리핀 및 그리스 상장기업을 포함하며, 실제 투자 종목과 비중은 시장 상황 및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종목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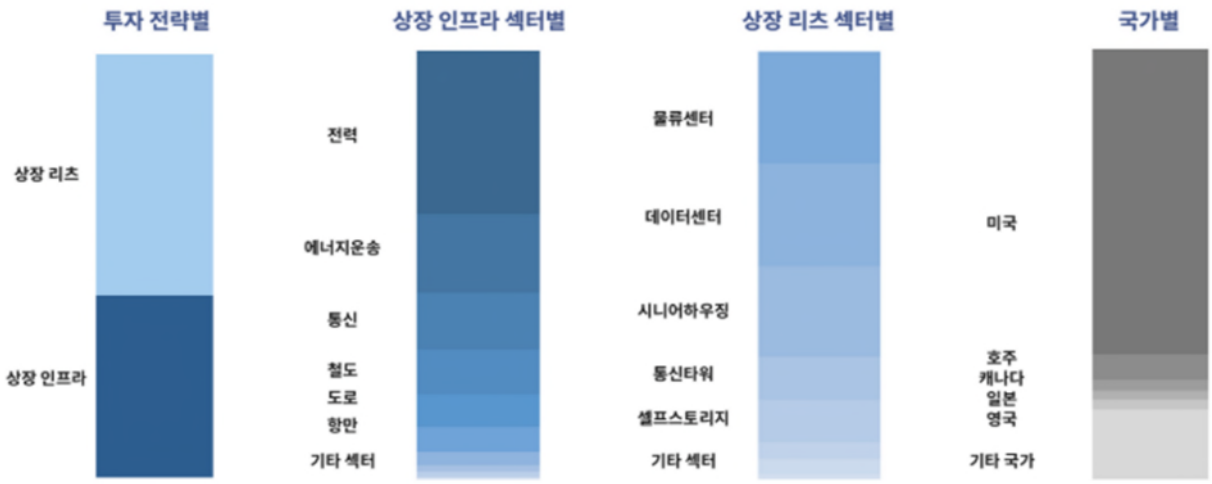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 [1)]



1)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은 상장 리츠 60%, 상장 인프라 40%로 Cohen & Steers의 전술적 배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포트폴리오]



※ 상기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 설정 기준으로 구성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미국달러화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미국 달러화(USD) 표시 보유자산 평가액의 50%이상 ~ 110%이하 범위내에서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 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변동위험과 환헤지정산에 따른 유동성 위험에 노출됩니다.

-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환헤지수단의 부재, 투자수익 발생, 추가설정·해지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미국 달러화(USD) 이외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환헤지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예상과 달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헤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환헤지 비용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수행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은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비용을 기재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편입하는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은 시가총액, 거래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종목에 투자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가 되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주식 대비 유동성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규모 환매 요청 등으로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 미지정 사유

ㅇ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은** 단순한 지수 추종이 아닌 적극적인 종목 선정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한 성과 비교가 동 투자신탁의 운용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를 설정하지 아니합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지정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지정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피투자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주식에 대한 정보 취득 및 모니터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관한 정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접 제공받아 운용현황 및 투자한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 정보에는 보유종목 내역, 섹터·국가별 투자비중, 운용성과 및 운용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의 공시 관련 사항은 신탁업자의 해외보관기관(Custodian)을 통하여 전달받습니다. 여기에는 배당 및 분배금, 기업행위(Corporate Action), 주주총회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외국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자본차익이 주된 수익이며,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및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익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시장상황 변동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수익구조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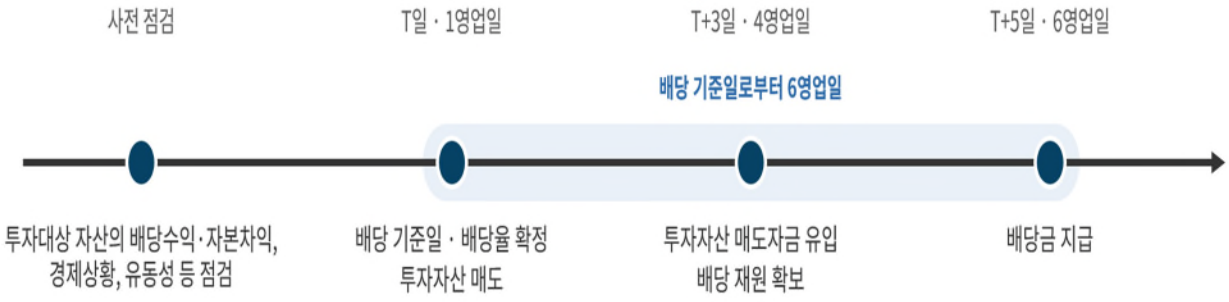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연배당 지급

(1) 개요

연배당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배당수익, 자본차익 및 경제 상황,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
배당 기준일	최초 분배기준일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2027년 11월 8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1월 8일로 합니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
배당금 지급일	배당기준일로부터 제 6영업일 배당금 지급 (단,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탁업자가 수령하는 날 이후 수익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2) 연배당 지급 일정 예시



연배당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 기준으로 기준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배당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연배당 지급 프로세스



연 배당금은 투자대상자산의 배당수익, 자본차익 및 경제상황,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매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실제 보유한 종목에서 발행한 분배 재원을 감안하여 매년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매년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중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원본에서 마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실적배당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위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 가격 하락 위험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하락하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경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 주식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가스·수도, 데이터센터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및 주가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물가, 경기변동,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인프라 이용수요, 원자재 가격, 에너지 비용 및 환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의 경우 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전력 공급 및 비용,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영업환경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인프라 관련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보유자산평가액의 50%이상 ~ 110%이하 범위(목표 환헤지 비율)내에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투자원금액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의 특성상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환율 및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헤지 비율이 목표 환헤지 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규모가 작거나 설정 및 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효율적인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USD 환율변동 위험이 일부 또는 전부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USD 이외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어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환율이 계약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일부를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성자산이란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필요한 시점에 쉽게 매매하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매각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으로 매각하지 못하거나 평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가격 등 충분한 평가정보가 없는 경우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	경제 상황이나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의 여건 또는 해당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종목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

	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섹터(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좀 더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

	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증권은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해 국가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특정국가(미국)의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특정국가(미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흥시장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흥국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정치·경제적 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법률, 회계제도, 정부규제 등의 급작스런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자산가치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역사가 짧은 국가의 경우 재정·금융정책 운영 미숙 등으로 해당국 금융시장 전체가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각종 사법제도의 미정착으로 인해 조세제도를 포함한 법률제도에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제도를 통한 상환 청구 사유발생시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매연기로 기회비용 발생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회계기준이 국제기준과 다를 수 있어 각종 재무제표 수치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시 정보의 범위가 국내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재무정보는 기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 시 그 결과의 신뢰성이 선진국가에 비해 낮을 수도 있습니다. 4. 유동성 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불리한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포트폴리오 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제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증권 등의 거래 시 결제 절차의 미발달로 인해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의 매매가격 신뢰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송금에 필요한 정부 승인이 지연

	또는 거절로 환매연기가 돼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거래소시스템 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증권 거래소의 운영미숙과 시스템 낙후로 인해 매매정지 등이 선진국가에 비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정지 등의 사건은 증권 등의 평가를 원활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유동성위험을 증대시켜 환매연기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환율 급변동 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수출의존도 등으로 통화가치가 선진국 통화에 비해 크게 변동하여 투자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환전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적 요인 및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수축 등으로 통화의 환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시장으로의 자금의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전지연 등으로 인한 환매연기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조세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선진국가에 비해 조세제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산이 처분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분배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실제 보유한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등 분배재원과 운용실적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분배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배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배금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시차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분배기준일(최초 분배기준일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2027년 11월 8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1월 8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부터 6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분배금 기준일과 분배금 지급일 간에 최소 6영업일의 시차가 발생하며, 분배금 지급일 도래 전의 대량설정 청구 혹은 대량환매 청구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이 급변동할 경우, 분배금 지급일에 실제 지급되는 분배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연분배지급에 따른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연1회 정기결산으로 인한 분배금 지급과 별도로 매년 분배금이 지급됨에 따라 분배금 지급시 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세금의 이연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복리운용의 효과면에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불리할 수 있고, 연1회 정기결산으로 인한 분배금만 지급되는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분배지급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년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원본에서 마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분배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감소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를 통해 주로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자산의 부도 등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권리행사 요구 및 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의 가치와 수익성이 부동산 및 인프라 시장의 가격변동, 임대료 및 임대수익률, 공실률, 금리변동 및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 수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은 전세계 또는 지역적인 경제상황, 과밀건축 및 경쟁증가, 재산세 및 운영비용 증가, 인구의 구조적 변화, 투자대상 국가의 건축규제 법령의 변경, 사고 또는 수용 손실, 환경적 위험, 점유권에 대한 소송 및 이자율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증가 등의 사유를 포함합니다. 또한, 홍수, 지진, 화산,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위험에 의해서도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해외주식은 글로벌에서 발행되거나 상장되는 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회계,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 청산 결제 절차, 배당에 관한 세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이 투자신탁은 투자를 통해 인프라 산업 또는 업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함에 따

따른 위험	라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 또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부동산 펀드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실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외국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리츠(REITs) 포함)은 홍수, 지진, 화산,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산에 손상이 생길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용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운용회사에 외화자산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위탁운용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전문인력의 교체,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위탁운용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위탁운용사가 변경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는 특정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발행한 주식(이하 “본 주식”이라 함)을 다른 국가의 예탁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하는 증서입니다. 주식예탁증서는 기초자산인 본 주식의 가격 변동 외에도, 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시장 간의 수급 차이, 본 주식과 주식예탁증서의 표시통화 차이에 따른 환율 변동, 예탁기관의 운영위험, 권리행사 제약, 각국의 제도 및 세제 차이 등에 따라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송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주로 투자하는데, 이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 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

	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납세 의무자 관련 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추가설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은 국외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변동에 따른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경제여건 변화와 국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해외 인프라 관련 주식 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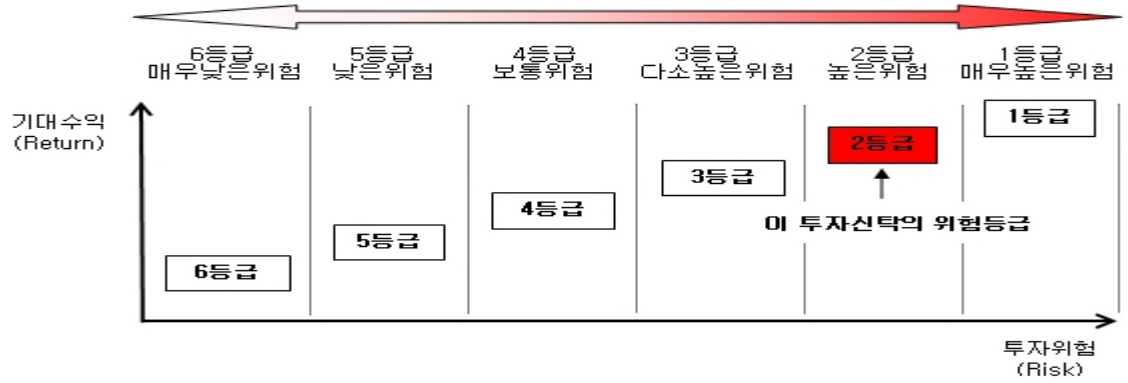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주)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키는 실물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낮은 위험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①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투기등급채권 등 자산, 파생상품,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투기등급채권 등 자산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무등급 포함), 투기등급CP(B+이하, 무등급 포함)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②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③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은 국내 신용등급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초자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담보수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6.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7.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8.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판매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납입금액의 0.7% 이내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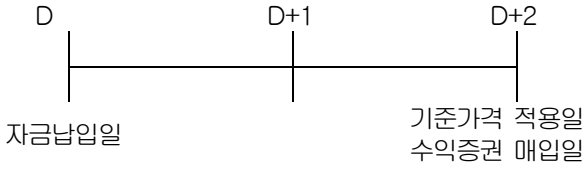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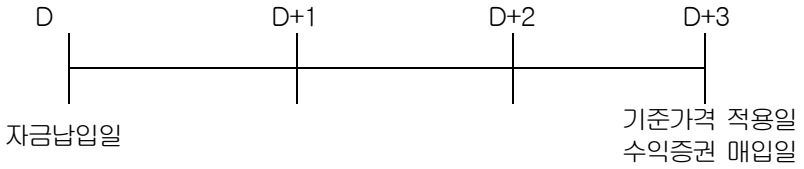
(주 3)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환매

※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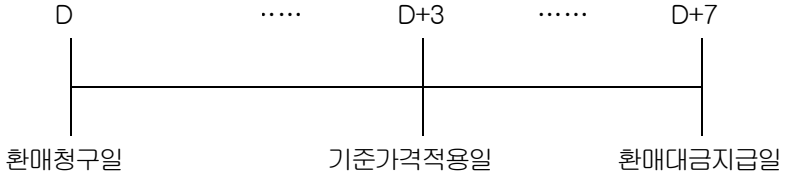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하지 않음)
		O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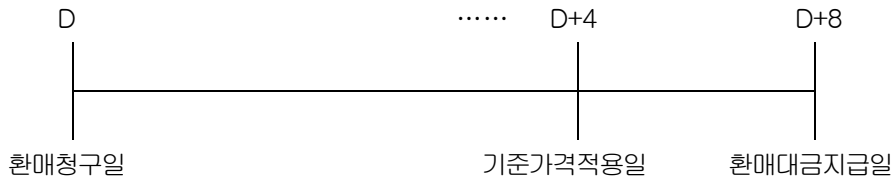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D+8)에 환매금액 지급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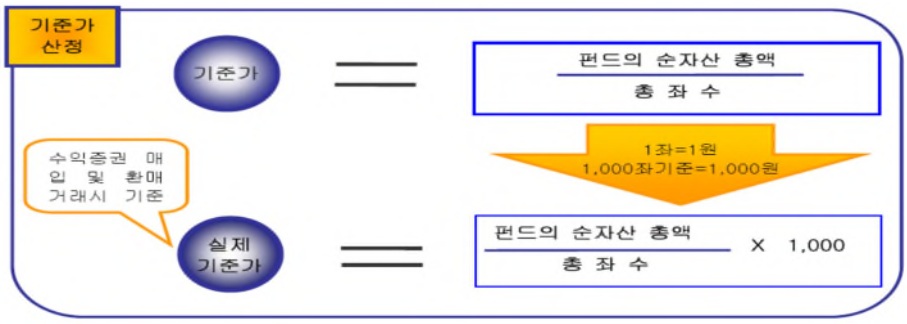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지분증권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 제20조에 따른 적용방법(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 다만,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실물자산등	-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 1.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산: 취득가격(단, 약정 이자가 예정된 자산은 발생이자 부리 가능)으로 평가 - 다만, 부도채권등이 된 경우 1) 평가액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산정함. 가. 일반거래 목적 감정평가액 나. 담보물에 대한 경/공매기준 감정평가액에 낙찰가율을 곱한 금액에서 당해 부도채권등이 배분 받을 수 있는 금액 다. 취득가액의 80%를 감액한 금액 라. 그 밖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다른 금액, 단 이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제1호가목과 제1호나목의 감정평가액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평가 기준일이 위원회 개최일부터 최근 3개월 안일 것 나. 평가 목적(일반거래 또는 경/공매)이 명시되어 있을 것 다. 부도채권등이 되었거나 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평가에 반영되었을 것 3) 제1호 나목의 낙찰가율은 당해 자산과 동일한 용도로 당해 자산이 위치한 읍면동단위 기준 최근 1년간 법원경매 매각가율을 말한다. 이 때 당해 자산이 위치한 읍면동의 경매 매각건수가 5건 미만이거나 매각가가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로 매각가 가중된 최근 1년간 법원경매 매각가율을 적용함. 가. 당해 읍면동과 인근 읍면동의 매각가율 나. 당해 자산이 위치한 시군구의 매각가율 다. 당해 자산이 위치한 시군구와 인근 시군구의 매각가율 라. 당해 자산이 위치한 광역시도의 매각가율 2.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자산은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한 가격으로 평가하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다른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평가함.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평가함.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위원장: 경영부문장(평가담당임원) 2. 위원: 운용부문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업 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납입금액의 0.7%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8000	0.5000	0.0600	0.0150	1.3750	-	1.3750	0.6600	1.3750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0.8000	0.7500	0.0600	0.0150	1.6250	-	1.6250	-	1.6250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8000	0.2500	0.0600	0.0150	1.1250	-	1.1250	1.240	1.1250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0.8000	0.3500	0.0600	0.0150	1.2250	-	1.2250	-	1.225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0.8000	0.9000	0.0600	0.0150	1.7750	-	1.7750	1.940	1.775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8000	0.4500	0.0600	0.0150	1.3250	-	1.3250	1.420	1.3250	-
수수료미징	0.8000	0.0300	0.0600	0.0150	0.9050	-	0.9050	-	0.9050	-

구-오프라인-기관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0.8000	0.6300	0.0600	0.0150	1.5050	-	1.5050	-	1.505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0.8000	0.4600	0.0600	0.0150	1.3350	-	1.3350	-	1.335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0.8000	0.2300	0.0600	0.0150	1.1050	-	1.1050	-	1.105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0.8000	0.4400	0.0600	0.0150	1.3150	-	1.3150	-	1.315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0.8000	0.2200	0.0600	0.0150	1.0950	-	1.0950	-	1.095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0.8000	0.0000	0.0600	0.0150	0.8750	-	0.8750	-	0.8750	-
부과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비용 예시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증권·선물·옵션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주 3)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대여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발생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6)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0	383	531	844	1,729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6	386	562	932	1,971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5	283	406	667	1,41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5	323	456	738	1,5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2	370	563	969	2,1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6	277	422	730	1,6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3	189	290	503	1,1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314	479	827	1,8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7	279	426	736	1,6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3	231	353	612	1,3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판매수수료 및	135	274	419	725	1,592

연금 (C-R)	보수・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229	350	606	1,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0	183	280	487	1,082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와 종류 C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1 와 종류 C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와 종류 C-e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상기 예시는 수수료 및 보수를 제외한 기타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주 3) [종류 A, 종류 A1, 종류 A-e, 종류 A-G]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납입금액의 1.0%, 납입금액의 0.5%, 납입금액의 0.5%, 납입금액의 0.7%]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
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해지일이 속하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분배금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분배금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배당수익, 자본차익 및 경제상황,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
2. 분배금 지급주기 : 매 1년
3. 분배기준일 : 최초 분배기준일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2027년 11월 8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1월 8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합니다.
4. 분배금 지급일 : 분배기준일로부터 6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탁업자가 수령하는 날 이후 수익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분배금의 지급연기

① 신탁계약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2.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② 분배금의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분배금 지급을 재개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매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실제 보유한 종목에서 발생한 분배 재원을 감안하여 매년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종류C-P, 종류C-Pe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납입 가능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최대 600만원 한도)의 13.2%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연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외)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류C-R, 종류C-Re 수익증권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최대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최대 600만원과 합산)의 13.2%(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대상자	세법상 거주자

가입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3년 이상
가입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대상펀드	1.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세제혜택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 방법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판매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판매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기준가격은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가격으로서 수익증권의 매입 및 환매시 적용됩니다.

한편, 과표기준가격은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수익자에 대한 과세표준산정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과표기준가격 산정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준가격 기준으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에게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표기준가격은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		
제2기		
제3기		

가. 요약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1기	제2기	제3기
	-	-	-
운용자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운용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원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1기	제2기	제3기
	-	-	-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기타수익			
운용비용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기타비용			
당기순이익			
매매회전율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주,백만원,%]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주 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합 계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제1기								
제2기								
제3기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
종류 모					
비교지수					
수익률 변동성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	-	-	-	-
종류 모					
비교지수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6.9.30. 현재 / 단위: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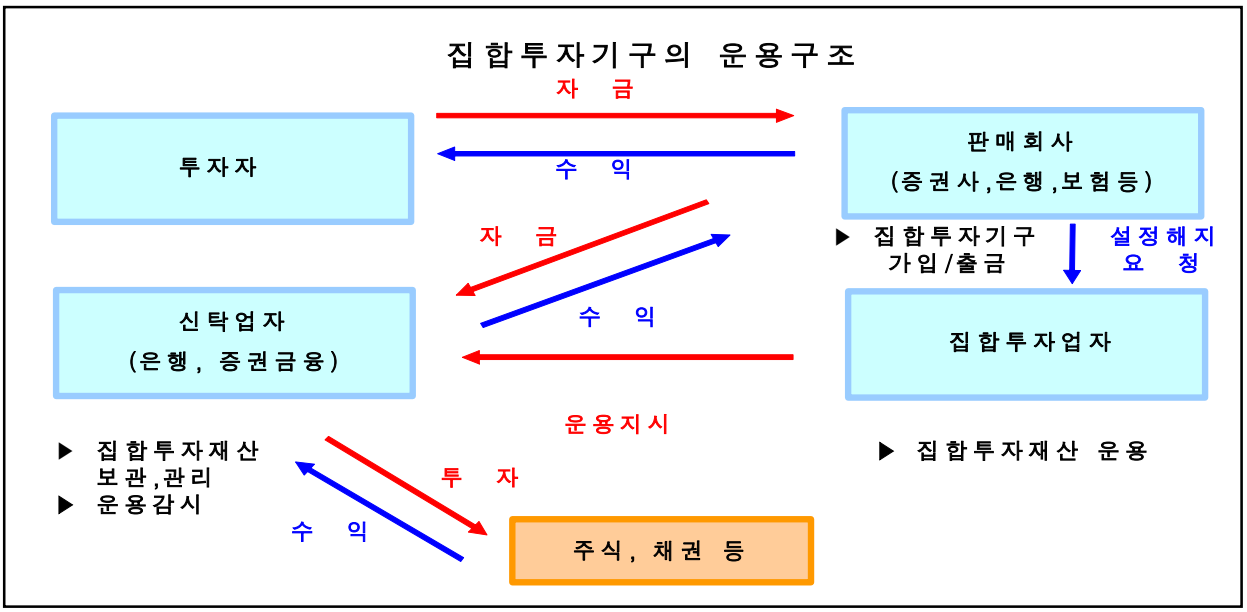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대표전화 : 02-6112-5999, kira.koreainvestment.com)
회사 연혁	2022.7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설립 (한국투자신탁운용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설립)
자본금	3억
주요주주현황	한국투자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업무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 4(당)기 (2025 년 12 월 31 일 현재)	제 3(전)기 (2024 년 12 월 31 일 현재)
I. 현금및예치금	35,337,279,728	27,093,061,177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592,958,587	3,619,681,464
III.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	331,906,487,517	219,815,322,408
IV.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201,905,822	221,908,026
V. 유형자산	2,956,755,862	4,649,444,779
VI. 무형자산	6,405,792,258	4,207,060,634
VII. 이연법인세자산	10,790,568,977	2,889,160,139
VIII.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9,082,243,595	8,460,185,419
IX. 기타비금융자산	6,829,774,847	119,443,777
자 산 총 계	418,103,767,193	271,075,267,823
I. 차입부채	269,000,000,000	168,000,000,000
II. 충당부채	1,545,358,859	408,362,799
III. 기타금융부채	32,353,069,552	17,980,350,256

IV. 기타비금융부채	10,283,254,973	7,590,076,054
부 채 총 계	313,181,683,384	193,978,789,109
I. 자본금	300,000,000	300,000,000
II. 자본잉여금	59,669,960,000	59,669,960,000
III. 이익잉여금	44,952,123,809	17,126,518,714
자 본 총 계	104,922,083,809	77,096,478,71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18,103,767,193	271,075,267,823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 4(당)기 2025 년 01 월 0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제 3(전)기 2024 년 01 월 01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I. 영업수익	98,634,757,067	51,081,723,268
1. 수수료수익	74,708,319,719	36,141,359,860
2. 이자수익	66,322,727	38,533,374
3.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1,425,027,512	556,949,367
4. 기타영업수익	22,435,087,109	14,344,880,667
II. 영업비용	50,198,846,885	28,603,636,653
1. 수수료비용	17,766,530	72,332,897
2. 이자비용	7,673,057,270	3,286,798,571
3.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378,954,275	558,721,601
4. 판매비와관리비	39,000,607,736	24,581,051,934
5. 외환거래손실	126,420,000	-
6. 기타영업비용	3,002,041,074	104,731,650
III. 영업이익	48,435,910,182	22,478,086,615
IV. 영업외수익	4,147,212,704	4,238,339,801
V. 영업외비용	17,877,325,051	5,235,435,928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705,797,835	21,480,990,488
VII. 법인세비용	6,880,192,740	5,482,473,789

VIII. 당기순이익	27,825,605,095	15,998,516,699
IX. 총포괄이익	27,825,605,095	15,998,516,699
X. 주당이익	463,760	266,642

라. 운용자산 규모

[2026.9.30 현재 / 단위:억]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투자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	-	-	-	1,094	7,677	26,866	15,696	38,514	-	89,84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를 아래의 해외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업무를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합니다.

(1) 업무위탁의 범위 및 사유

구 분	내 용
업무위탁 대상투자신탁	한국리얼에셋 코헨앤스티어스 글로벌 인프라 연배당 부동산 투자신탁(H)[REITs-재간접형]
업무위탁의 범위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회사 개요

회 사 명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
주소 및 연락처	1166 Avenue of the Americas, 30th Floor, New York, NY 10036, USA (연락처: +1 212-832-3232)
회사연혁	1986년: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 설립 2003년: 글로벌 부동산·상장 인프라 및 우선주 투자전략 출시 2004년: 모회사 Cohen & Steers, Inc.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종목코드: CNS)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연락처: 1588-5000, www.woori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KB 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연락처 : 02-2073-0595, www.kbfp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www.koreaa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

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현황, 정리이행계획, 정리실적을 업무보고서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 5%이하인 경우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판매시 판매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제3호의2 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는 사항
 2.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

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

12의2. 투자신탁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	-	-	-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의 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의 내역입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가. 지분증권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수익률기여도 및 기타 기여도 등을 평가 나.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과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투자금

구 분	내 용
투자주체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승인일자	2026.10.13
투자집행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10억원 ※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제2호에 의해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함)인 집합투자기구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 -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따름 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50%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 다.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거래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